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01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 : 김도읍 • 김정재 • 장동혁

구자근 • 권영진 • 유상범

조배숙 • 박성훈 • 김희정

백종헌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.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 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.

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,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제44조의7).

법률 제 호

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"제6호의2 및 제6호의3"을 "제6호의2, 제6호의3 및 제6호의4"로 한다.

6의4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조의2제3 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) ① -----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6의3. (생략) 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의4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 제2 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 정보 7. ~ 9. (생 략)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-----제6호의2. 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 <u>및 제6호의4</u>-----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 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 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 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 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

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	
명할 수 없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